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이 돌봄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김진학¹⁾ · 송민선²⁾

서론

연구의 필요성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질환의 양상이 급성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인 치매, 뇌졸중 등으로 변화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1]. 그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치매전문인력양성,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1]. 장기요양서비스 요구의 특성상 급성의 집중적 고난이도 서비스보다는 만성적이며 반복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우리나라에도 요양보호사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2]. 또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치매노인을 포함한 노인성질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고 있고[2], 2017년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영향으로 요양시설의 기능이나 돌봄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해 가족에 의한 부양기능감소로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서비스는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4].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치매노인은 인지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존적이므로 다른 만성질환을 돌보는 경우보다 가족들이 쉽게 소진될 수 있고,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들에 대한 요양부담감으로 조기에 요양시설에 위탁하게 된다[5]. 요양보호사는 치매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는 인력으로 노인을

돌보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5]. 이처럼 노인 돌봄의 주된 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대로 노인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6].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공격적 행위나 욕설 등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치매노인을 꺼리거나 돌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차별적인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7]. 이처럼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 행위를 실천하는 일차적인 서비스 전달 책임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보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인권의식을 확인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8].

장기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돌봄행위 이행은 직무만족, 요양보호사 경력과 치매교육 참여 횟수가 관련성이 있었는데, 돌봄행위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교육참여로 돌봄지식의 확장을 도모하여 근무경력을 높여야 한다[9]. Noh, Lim과 Hur [10]는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돌봄경험이 돌봄행위 이행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교육은 치매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고도 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0].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향 있는 교육으로 노인인권의식과 직업윤리를 제시하여 이러한 교육내용이 근무경력과 함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만족으로 이어져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도 하였다[11]. Hwang, Lee와 Lee [12]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이 돌봄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쳤고,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돌봄 서비스

주요어 : 요양보호사, 인권, 돌봄, 이행

* 논문은 2019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체 연구사업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https://orcid.org/0000-0002-6111-8294>)

2)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mssong@konyang.ac.kr) (<https://orcid.org/0000-0001-8816-5122>)

투고일: 2020년 1월 22일 수정일: 2020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24일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하여 인권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관련성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요양부담감이 높을수록 돌봄행위 이행이 낮았으며[5], 요양보호사들에서 직무에 대한 부담감이 치매노인들의 돌봄행위 이행에 장애요소라고도 하였다[13,14]. 결국 요양보호사들의 요양부담감은 노인에 대한 인식과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돌봄행위 이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요양보호사의 치매문제행동에 대한 요양부담감 [5,15], 치매노인의 태도와 교육수준[10], 감정노동과 정신건강 [16]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요양부담감, 치매노인의 태도 등을 포함한 영향요인들은 결국 장기요양시설의 대상자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지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인권의식을 어떻게 인지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돌봄행위 이행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인권의식과 돌봄행위 이행과 관련된 연구는 Hwang 등 [12]의 연구 외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권 의식이 돌봄행위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을 높여 돌봄행위 이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치매노인들의 개별 간호요구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과 돌봄행위 이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봄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과 돌봄행위 이행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들의 인권의식과 돌봄행위 이행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들의 돌봄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과 돌봄행위 이행과의 관련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이 돌봄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선정기준은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스스로 설문이 가능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자로 하였다. 장기요양시설은 입소 정원수 규모가 39명에서 200명까지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들로 시설의 규모를 다양하게 하였으며, 시설장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방문허락을 받았으며, 10개 장기요양시설에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허락받아 수집된 자료는 S시의 S구와 D구 소재 2개 요양원에서 26부, G도 Y시, P시 및 G시 소재 요양원 3곳에서 58부, C도 C시 소재 요양원에서 20부, C도 I시 소재 요양원에서 25부, G시 2개 요양원에서 23부, P시 D구 소재 요양원에서 18부로 총 170부였다.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인자를 7개로 하였을 때, 153명의 대상자가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70명에게 설문을 배부하였으며, 답변이 불충분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총 153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

노인인권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요양보호사의 노인들에 대한 인권의식 측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평가 도구 및 실행지침[17]을 토대로 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무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Park [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평등권 4문항, 누구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 13문항,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권 7문항,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삶을 영위하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권 4문항,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자로서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참정권 1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18]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4~.80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며, 하위항목의 Cronbach's α 는 평등권 .80, 자유권 .75, 생존

권 .62, 사회권 .42이며, 참정권은 1문항으로 Cronbach's α 를 산출하지 않았다.

● 돌봄행위 이행

돌봄행위 이행은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일상생활의 보조 및 일차적 돌봄을 실제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19]. 돌봄행위 이행의 측정은 Hwang과 Jang [19]이 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인력을 대상으로 개발한 조호활동실천도구를 Kim [20]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돌봄행위 이행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4개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의사소통영역 5문항, 안전관리영역 8문항, 건강도모영역 6문항, 일상생활기능영역 4문항이었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행위 이행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며, 하위항목의 Cronbach's α 는 의사소통영역 .82, 안전관리영역 .83, 건강도모영역 .84, 일상생활기능영역 .84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하였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요양시설역량강화사업의 시설장 과정에 참여한 장기요양시설 중 시설장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방문허락을 받았다. 연구자가 10개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요양시설은 연구대상인 요양보호사의 동질성을 감안하여 입소시설인 요양원으로만 한정하였다.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외 다른 면허 혹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특성이 반영되게 하였다.

요양보호사들에게 동의를 받기 전 사전에 휴게공간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 설문작성 후 회수할 예정임을 미리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하게 한 후 휴게공간의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연구보조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26.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과 돌봄행위 이행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주요변수들(연령, 돌보는 치매환자 수, 인권의식, 돌봄행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확인하였으며, 대상자들의 돌봄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과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포함하여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No. P01-201910-21-004)에서 심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중 중간에 자발적으로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감사의 표시로 3,000원 상당의 답례를 선물로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준수하였으며, 연구종료 후 자료들은 3년간 보관하며 이후 관련서류는 분쇄·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54.56±7.37세로,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10명(6.5%),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16명(10.5%),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87명(56.9%), 60세 이상은 40명(26.1%)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8명(5.2%), 여자가 145명(94.8%)으로 여자가 많았다. 가족돌봄경험이 있는 경우가 87명(56.9%), 없는 경우가 66명(43.1%)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3명(2.0%), 중학교 졸업 17명(11.1%), 고등학교 졸업이 99명(64.7%), 대학교 졸업 34명(22.2%)이었다. 요양보호사 근무경력은 평균 6.13±5.55년이었으며, 1년 미만이 7명(4.6%),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66명(43.1%),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46명(30.1%), 10년 이상이 34명(22.2%)이었다. 요양보호사 외 면허 및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7명(30.7%)이었으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행정 및 사무 12명(7.9%), 일상생활지원 110명(71.9%), 간호 및 처치 10명(6.5%), 신체활동훈련 6명(3.9%), 기타 15명(9.8%)이었다.

돌보는 치매환자 수는 평균 5.25±2.97명이었으며, 2.5명 이하가 67명(43.8%), 2.6명 이상에서 5명 미만은 19명(12.4%), 5명 이상에서 10명 미만은 58명(37.9%), 10명 이상은 9명(5.9%)이

었다. 치매교육횟수는 1회 28명(18.3%), 2회 17명(11.1%), 3회 이상 108명(70.6%)이었으며, 치매돌봄경험이 있는 경우가 57명(37.3%), 없는 경우가 96명(62.7%)이었다.

대상자의 업무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 24명(15.7%), ‘만족한다’ 59명(38.5%), ‘보통이다’ 57명(37.3%), ‘만족하지 않는다’ 8명(5.2%), ‘매우 불만족하다’ 5명(3.3%)으로 응

답하였고, 인권교육에 대해 ‘필요하다’가 141명(92.2%)이었으며, ‘필요없다’ 12명(7.8%)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인권의식 및 돌봄행위 이행

대상자의 인권의식의 평균은 3.68±0.59점이었으며, 하위영역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 Workers (N=153)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year)	30≤ ~ <40	10 (6.5)	54.56±7.37
	40≤ ~ <50	16 (10.5)	
	50≤ ~ <60	87 (56.9)	
	≥60	40 (26.1)	
Gender	Male	8 (5.2)	
	Female	14 (94.8)	
Family care experience	Yes	87 (56.9)	
	No	66 (43.1)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3 (2.0)	
	Middle school	17 (11.1)	
	High school	99 (64.7)	
	University	34 (22.2)	
Career (year)	<1	7 (4.6)	6.13±5.55
	1≤ ~ <5	66 (43.1)	
	5≤ ~ <10	46 (30.1)	
	≥10	34 (22.2)	
Possession of other health care-related license	Have	47 (30.7)	
	None	106 (69.3)	
Other licences [†]	Social worker	37 (24.2)	
	Nurse	10 (6.5)	
	Nurse assistant	16 (10.5)	
	Physical therapist	1 (0.7)	
	Dietitian	9 (5.9)	
Task	Administrative and office work	12 (7.9)	
	Support for daily activity	110 (71.9)	
	Nursing and treatment	10 (6.5)	
	Physical activity training	6 (3.9)	
	Others	15 (9.8)	
Number of caring dementia patient	≤2.5	67 (43.8)	5.25±2.97
	2.6≤ ~ <5	19 (12.4)	
	5≤ ~ <10	58 (37.9)	
	≥10	9 (5.9)	
Number of dementia education	1	28 (18.3)	
	2	17 (11.1)	
	≥3	108 (70.6)	
Dementia care experience	Yes	57 (37.3)	
	No	96 (62.7)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	24 (15.7)	
	Satisfied	59 (38.5)	
	Normal	57 (37.3)	
	Unsatisfied	8 (5.2)	
	Very dissatisfied	5 (3.3)	
Perceived needs of human rights education	Yes	141 (92.2)	
	No	12 (7.8)	

[†] Multiple response.

각각의 평균점수는 평등권 3.68±0.62점, 자유권 3.49±0.76점, 생존권 3.82±0.72점, 사회권 3.77±0.72점, 참정권 3.93±1.20점이었다. 돌봄행위 이행은 평균 4.36±0.41점이었으며, 그 중 의사소통영역은 4.22±0.56점, 안전관리영역은 4.41±0.45점, 건강도모영역은 4.56±0.42점, 일상생활기능영역은 4.12±0.67점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및 돌봄행위 이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았으나(F=2.71, p=.047) 사후검정에는 차이가 없었다. 10년 이상인 경우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보다 인권의식 점수가 높아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18, p=.026). 요양보호사 외 면허 및 자격증 유무에 따라 면허 및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인권의식이 높았으며(t=-2.12, p=.036), 돌보는 치매환자 수가 2.5명 이하로 적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았으나(F=2.86, p=.039) 사후검정에는 차이가 없었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경우보다 인권의식이 높았다(t=2.28, p=.024). 반면, 성별, 가족돌봄경험, 교육수준, 담당업무, 치매교육횟수, 치매돌봄경험, 업무 만족도에 따른 인권의식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 이행에서는 성별에 따라 여자가 남자보다 돌봄행위 이행이 높았고(t=-2.65, p=.009). 가족돌봄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돌봄행위 이행이 높았으며(t=2.21, p=.029), 치매돌봄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돌봄행위 이행이 높았다(t=2.49, p=.014). 반면, 연령, 교육수준, 요양보호사 근무경력, 요양보호사 외 면허 및 자격증 유무, 담당업무, 돌보는 치매환자 수, 치매교육횟수, 업무 만족도, 인권교육 필요성에 따른 돌봄행위 이행 차이는 없었다(Table 3).

대상자의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권의식과 돌봄행위 이행(r=.36, p<.001)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령과 인권의식(r=-.15, p=.005), 돌보는 치매환자 수와 인권의식(r=-.16, p=.043)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대상자의 돌봄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돌봄행위 이행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비교하고 각 변인의 하위영역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일반적 특성 변인 중에 돌봄행위 이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가족돌봄경험, 치매돌봄경험을,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인권의식을 포함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가족돌봄경험, 치매돌봄경험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적용하기에 앞서, 먼저 설명변수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81~.98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2~1.25로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Watson은 1.680로 2에 근접하여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충족하였고, 이에 회귀모형 사용은 적합함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성별(β=.19, p=.009), 가족돌봄경험(β=.19, p=.023), 인권의식(β=.38, p<.001)이 대상자의 돌봄행위를 23%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2〉 Human Rights and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 of Care Workers (N=153)

Variable	Mean ±SD	Min	Max
Human rights	3.68±0.59	2.07	5.00
Equality rights	3.68±0.62	1.77	5.00
Rights to freedom	3.49±0.76	1.71	5.00
Rights to survive	3.82±0.72	1.50	5.00
Social rights	3.77±0.72	2.00	5.00
Political rights	3.93±1.20	1.00	5.00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	4.36±0.41	3.09	5.00
Communication area	4.22±0.56	2.20	5.00
Safety management area	4.41±0.45	2.88	5.00
Health plan area	4.56±0.42	3.33	5.00
Daily life area	4.12±0.67	2.00	5.00

讨 의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이 돌봄행위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돌봄행위 이행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

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입소자 2.5명당 1명이며,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21].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평균 5.25명의 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Seo와 Park [22]의 6.97명보다는 적었으나 두 연구 모두 기준보다 유의하게 많은 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인력 보강이 장기요양시설에 많이

<Table 3> Differences to Human Rights and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53)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Human rights Mean±SD	t or F	<i>p</i> Scheffé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 Mean±SD	t or F	<i>p</i>
Age (year)	30 ≤ ~ <40	3.98±0.80	2.71	.047	4.30±0.58	0.15	.931
	40 ≤ ~ <50	3.93±0.50			4.40±0.44		
	50 ≤ ~ <60	3.66±0.57			4.35±0.41		
	≥60	3.54±0.58			4.38±0.35		
Gender	Male	3.50±0.61	-0.88	.381	3.99±0.40	-2.65	.009
	Female	3.69±0.59			4.38±0.40		
Family care experience	Yes	3.61±0.60	-1.56	.120	4.42±0.37	2.21	.029
	No	3.76±0.58			4.27±0.45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3.93±0.87	1.43	.236	4.49±0.25	1.05	.372
	Middle school	3.94±0.69			4.45±0.45		
	High school	3.64±0.57			4.37±0.39		
	University	3.64±0.56			4.26±0.45		
Career (year)	<1 ^a	3.70±0.14	3.18	.026	4.25±0.19	0.90	.441
	1 ≤ ~ <5 ^b	3.55±0.58			4.33±0.44		
	5 ≤ ~ <10 ^c	3.68±0.65			4.35±0.43		
	≥10 ^d	3.93±0.54			4.45±0.36		
Possession of other health care-related license	Have	3.83±0.61	-2.12	.036	4.29±0.43	1.37	.174
	None	3.61±0.58			4.39±0.40		
Task	Administrative and office work	3.84±0.68	0.67	.613	4.29±0.38	0.60	.661
	Support for daily activity	3.65±0.57			4.35±0.42		
	Nursing and treatment	3.89±0.53			4.26±0.42		
	Physical activity training	3.72±0.61			4.48±0.35		
	Others	3.60±0.72			4.46±0.35		
Number of caring dementia patient	≤2.5	3.82±0.63	2.86	.039	4.37±0.46	0.35	.790
	2.6 ≤ ~ <5	3.61±0.56			4.41±0.34		
	5 ≤ ~ <10	3.58±0.52			4.34±0.38		
	≥10	3.37±0.34			4.26±0.29		
Number of dementia education	1	3.55±0.56	2.70	.070	4.33±0.36	0.20	.818
	2	3.45±0.44			4.32±0.46		
	≥3	3.75±0.61			4.37±0.42		
Dementia care experience	Yes	3.64±0.63	-0.55	.583	4.46±0.35	2.49	.014
	No	3.70±0.57			4.29±0.43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90±0.58	1.17	.324	4.51±0.38	1.20	.315
	Satisfied	3.60±0.62			4.34±0.36		
	Normal	3.65±0.57			4.31±0.47		
	Unsatisfied	3.79±0.50			4.38±0.34		
	Very dissatisfied	3.68±0.67			4.21±0.21		
Perceived needs of human rights education	Yes	3.71±0.59	2.28	.024	4.37±0.40	1.68	.095
	No	3.31±0.58			4.17±0.53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은 생존권이 가장 높았으며, 자유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기본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12]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의 요양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23], 특히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신체활동지원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돌봄행위 이행 정도는 모든 항목에서 모두 4점 이상이였다. 이는 Yoo [16]는 모든 항목이 3.68점~3.87점,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연구한 Noh 등 [10]은 3.67점~3.87점대를 보여 연구마다 중간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치매지식이 높을수록 돌봄행위 이행정도가 높다고 한 Kim [20]의 연구를 볼 때,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70.6%가 치매교육을 3회 이상 받아 모두 치매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돌봄행위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요양보호사 근무경력, 요양보호사 외 면허 및 자격증 유무, 인권교육 필요성에 따라 인권의식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상관관계분석에서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낮았으며, 돌보는 환자수가 많을수록 인권의식이 낮았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연령과 인권

교육 경험을 제시한 Son [24]의 연구와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 인권보호 실천정도가 높았던 Park [18]의 연구와 일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근무경력에서는 본 연구 대상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인권의식은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반면, 그 다음 순위는 1년 미만으로 연령과 근무경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양보호사 외 면허 및 자격증 소지유무에서는 행정 및 사무업무와 간호 및 처치 업무를 하는 경우 인권의식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Seo와 Park [22]의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을 확인한 것은 아니나 요양보호사가 소규모 시설에 근무하고, 비정규직이고, 담당 노인 수가 많을수록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환경이 힘들수록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 Jo와 Kim [25]은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학대행위가 감소한다고 하여 이러한 관련성을 볼 때, 결국 돌보는 치매환자 수가 많을수록 인권의식이 낮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서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요양보호사들에게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인권에 대해 반복적이며 사례를 들어서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인권교육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현재 웹기반으로 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대상 노인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사례별로 개발된 연구도 있어[26] 요양보호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

〈Table 4〉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153)

Variables	Age	Number of caring dementia patient	Human rights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
	<i>r</i> (<i>p</i>)			
Age	1			
Number of caring dementia patient	.19 (.012)	1		
Human rights	-.15 (.005)	-.16 (.043)	1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	.12 (.117)	-.03 (.705)	.36 (<.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Compliance with Caring Behaviors

(N=153)

Variables	B	Standard error	β	t	<i>p</i>
(Intercept)	73.39	5.10		14.39	.000
Gender [†]	8.10	3.07	.19	2.64	.009
Family care experience [†]	3.53	1.53	.19	2.31	.023
Dementia care experience [†]	2.27	1.56	.12	1.46	.147
Human rights	0.21	0.04	.38	5.16	<.001

$R^2=.23$, Adjusted $R^2=.21$, $F=11.05$, $p<.001$

[†] Dummy coded (male=0, female=1; no experience=0, experience=1).

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 돌봄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가족돌봄경험, 인권의식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돌봄행위 이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여자에서, 가족돌봄경험이 있을수록 돌봄행위 이행이 높았다. 이는 치매노인을 돌보았던 경험이 있는 대상자일수록 돌봄행위 이행 정도가 높다고 한 Noh 등[10]은 돌봄경험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증상들에 대처하는 방법과 일상생활관리 등 치매노인의 돌봄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치매노인의 돌봄에 있어 치매 관련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돌봄을 포함시켜야 하며[27] 이러한 돌봄을 위한 전문성 부재는 좋은 돌봄의 장애요인이므로[28] 이를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29]. 반면, Yun과 Ryu [15]의 연구에서는 성별, 노인돌봄경험에 따른 돌봄행위 이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달랐다. 이는 여자 요양보호사가 설문대상 중 상대적으로 많았으므로 숫자가 적은 남자 요양보호사의 응답과 비교한 결과로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So [30]는 여자 요양보호사가 많은 것은 전통적으로 돌봄의 주체가 여자라는 사고와 기존의 돌봄에서 여자들의 돌봄의 역할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자 요양보호사의 수가 많고, 돌봄의 역할 측면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성별 수를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권의식이 돌봄행위 이행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Noh 등[10]의 선행연구에서 인권태도가 영향요인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인권의식은 인권옹호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객응대 등의 서비스의 태도, 의사소통 등의 서비스 시스템 등을 측정한 서비스 지향성이 높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옹호행동 수준이 높아진다고도 하였다[8].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에게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질이 높았던 Hwang 등[12]의 연구에서처럼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돌봄행위 이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국단위의 편의표출자료이나 돌봄행위 이행에 대해 직접 관찰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추후 요양보호사들의 치매환자들에게 시행하는 돌봄행위 이행에 대한 관찰조사를 통해 이행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Kim [29]은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치매노인의 재가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요양보호사의 돌봄행위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에서만 시행한 연구로 향후 재가서비스에서의 돌봄

행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간호실무 측면에서 인권의식이 돌봄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여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돌봄행위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인권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간호연구 측면에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며,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설계나 새로운 교육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과 돌봄행위 이행을 확인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과 돌봄행위 이행은 중간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성별, 가족돌봄경험, 인권의식이 돌봄행위 이행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자에서, 가족돌봄경험이 있는 경우, 인권의식이 높은 경우에서 돌봄행위 이행이 높았다. 돌봄행위 이행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의 강화가 필요하며, 돌봄행위가 인권의식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사례를 통한 실제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향후 요양보호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재가와 시설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의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인권의식을 높여 장기요양시설의 치매노인들의 간호요구를 잘 파악하여 돌봄행위 이행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cited 2013 January 28]. Available from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9mn.jsp?PAR_MENU_ID=06&MENU_ID=0609030203
2. Lee SJ. A study on the family caregiving with demented elderly pers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04;18(2):127-142.
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lan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7 [cited 2020 March 6]. Available

-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G=00&CONT_SEQ=341876
4. Kim GB, Lee HG, Sung SH.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nursing needs of the elderly in nursing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09;20(1): 1-10.
 5. Kim JY. The effect of caregiver's dementia problems on the elderly recognition and caring performance [master's thesis]. Gyeongbuk: Kaya University; 2020. 84 p.
 6. Won YH. The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senior citizens human righ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2017;3(2):39-57.
 7. Chon YH.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care workers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Studies on Life and Culture*. 2017;43:129-171.
 8. Kim MK, Kim MH, Kim JH, Chung SD. A study on human rights behavior of korean care workerin long term care facilities: The interaction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service orientation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6;36(3):673-691.
 9. Kim CG. Influencing factors of the perceived formal caregivers' caring competences for elders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3;15(2): 95-102.
 10. Noh JH, Lim EJ, Hur J. The factors influencing careworker's care performance for elders with dementi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2;6(3):75-84. <https://doi.org/10.12811/kshsm.2012.6.3.075>
 11. Kim MH, Yuk HS, Jung MH. Study on job training and job relevance of care workers.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2016;12(1):103-132.
 12. Hwang SY, Lee JI, Lee KJ. The effect of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care givers on the quality of servic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18;32(2):225-245. <https://doi.org/10.18398/kjlgas.2018.32.2.225>
 13. Kang CB. A study o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of care work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1;54:193-209. <https://doi.org/10.21194/kjgsw..54.201112.193>
 14. Choi HK. A study on 'good care' perceived by direct care workers of nursing faciliti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10;48:31-58. <https://doi.org/10.18398/kjlgas.2018.32.2.225>
 15. Yun SW, Ryu SA. Impact of dementia knowledge, burden from 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and empathy in the caring behavior of certified caregivers in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5;17(3):131-141. <https://doi.org/10.17079/jkgn.2015.17.3.131>
 16. Yoo SY.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d mental health on care performance of certified caregivers for elders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2018;13(2):141-148. <https://doi.org/10.15715/kjhcom.2018.13.2.141>
 17. Moon YR, Moon MH, Jeon JH, Jang HS, Kim YJ, Kim HH.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tools and practice guidelines [Internet].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3 [cited 2020 March 17]. Available from: <http://humanrights.go.kr/search/index.jsp>
 18. Park HJ.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nd awareness of senior human rights upon the practice of seniors' human rights protection in long-term medical care institutions [master's thesis]. Chungnam: Hanseo University; 2015. 105 p.
 19. Hwang SY, Jang KS. A study on the levels of dementia-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among nursing assistants caring for institutionalized elder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999;11(3):378-388.
 20. Kim HH. The effect of geriatric care helper's knowledge of dementia on job stress self-efficiency and care fulfillment [dissertation]. Daegu: Daegu Haany University; 2014. 141 p.
 21.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internet]. Sejong: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cited 2020 March 6].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J1:3>
 22. Seo SH, Park HO. The effect of job environments on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among care 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2;32(1):237-256.
 23.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persons [internet]. Sejong: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9 [cited 2020 March 17].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

- %91#liBbgcolor2
24. Son DS.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of certified caregiv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10;48:299-322. <https://doi.org/10.21194/kjgsw..48.201006.299>
 25. Kim HS, Jo MB, Kim JB. Relationships of social welfare facility employees' human rights awareness with their ill-treatment ac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2014;6(2):1-19.
 26. Kim KK. Development of a web-based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working in nursing homes on human rights of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4):463-472. <https://doi.org/10.4040/jkan.2010.40.4.463>
 27. Volicer L, Simard J. Palliative care and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ementia: Medical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015;27(10):1623-1634. <https://doi.org/10.1017/S1041610214002713>
 28. Choi HK. A study on 'good care' perceived by direct care workers of nursing faciliti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0;48:31-58. <https://doi.org/10.21194/kjgsw..48.201006.31>
 29. Kim CG. Effects of perceptions regarding purpose in life and good death on caring behaviors of formal caregivers of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8;20(2):57-66. <https://doi.org/10.17079/jkgn.2018.20.2.57>
 30. So SS. Attitude to elderly human rights and occupational awareness of long-term care givers. *Global Health & Nursing*. 2014;4(2):59-67.

The Effects of Awareness of Human Rights on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 of Long-term Care Workers*

Kim, Jin Hak¹⁾ · Song, Min Sun²⁾

1) Professor,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2)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 worker'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s among long-term care worker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ompliance with caring behaviors. **Methods:**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153 long-term care workers between October 4th and October 20th,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6.0 program. **Results:** The data indicate a difference in awareness of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careers of care workers, the possession of other health care-related licenses, and the perceived needs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data also indicate a difference in the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der, family care experience, and dementia care experience. The factors influencing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study, are gender ($\beta=.19$, $p=.009$), family care experience ($\beta=.19$, $p=.023$), and human rights ($\beta=.38$, $p<.001$). It was found that 23% could explain the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s. **Conclusion:** Long term care workers were found to have a higher level of the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s as their awareness of human rights increased.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liance of caring behaviors among long-term care workers, more educational programs on human rights should be provided.

Keywords: Caring; Compliance; Human rights; Worker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ing of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Min Sun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58 KwanJeoDong-ro, Seo-gu, Daejeon, 35365, Republic of Korea

Tel: 82-42-600-8566, Fax: 82-42-600-8555, E.mail: mssong@konyang.ac.kr